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4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